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순서

□ 5분 자유발언 : 3명

- 신미정 의원 : 농업유산, '서덕들' 보전을 위한 제언
- 최준규 의원 :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
- 김홍섭 의원 : 주민참여예산, '실속' 채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일반의안 4건
- 보고자 : 최준규 위원장



거창군의회
GEOCHANG COUNTY COUNCIL

의사일정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15.(목) 10:00>

부의안건	비고
<p>【제2차 본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거창군 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산업건설위원회
<p>【산회】</p>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1. 15. 10:00)

5 분 자유 발언

농업유산, '서덕들' 보전을 위한 제언



신 미 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 미 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덕들이 가진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원산과 현성산 사이로 펼쳐진 105ha 규모의 서덕들은 전봇대 하나 없이, 비닐하우스 하나 없이,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온 농업 경관으로,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농업 유산을 현재까지 잘 간직해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관은 우연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을 못 해서가 아니라, 서덕들의 경관이 유지되길 원하는 농민들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의도적으로 지켜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관은 쌀값 하락, 고령화, 열악한 영농 여건 앞에서 더 이상 농민 개인의 희생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우리 의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덕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서덕들 보전과 지원 정책 마련을 목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해당 연구활동은 서덕들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주민들의 분명한 참여 의지가 확인되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서덕들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4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결과 81%의 농민이 경관 보전 정책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서덕들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보전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덕들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 하더라도 서덕들 농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덕들의 보전에 대한 책임을 농민 개인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되기에 행정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연구활동 결과로서 서덕들의 여건 분석, 주민 인식 조사, 그리고 하동, 고창, 포항, 평창 등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배수와 수로 등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경관작물 도입은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참여 거버넌스와 명확한 보상 체계가 핵심이라는 점이 명확히 정리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연구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조례 제정, 경관보전직불제 연계, 경관관리협의체 구성, 시범사업 추진 등 사업 과제들을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서덕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담당 부서에서 여러 사업들을 시행해 왔지만, 이제는 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지켜온 가을철 황금 들녘, ‘서덕들’의 원형은 그대로 보전하되 봄에도 관광객이 서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경관작물을 연구하고,

거창의 다른 핵심 관광지와 연계하는 등 거창만의 전략적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서덕들의 경관 가치를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제대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덕들을 지키는 일은 농업을 지키는 일이자, 거창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의회가 시작한 연구가 행정의 정책으로, 그리고 주민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님들 모두 역시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1. 15. 10:00)

5 분 자 유 발언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



최 준 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거창군의 체류인구는 49만 5,021명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창을 찾은 같이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거창군은 경상남도 내 10개 인구감소 군 지역 중 의령군 39만 5천 명, 함양군 41만 2천 명에 이어 8번째 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활인구 전체를 봐도 순위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생활인구 100만명 로드맵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듯 합니다.

물론 한마당 축제, 꽃앤밸 축제가 개최되었던 3/4분기 자료가 발표되면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거창군이 연간 관광객 1,000만명 목표로 추진하는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된다면 생활인구 100만명 시대의 정착은 생각보다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창군은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어 관광산업의 주축을 ‘산림 관광’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높은 산으로 인해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여 유입의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거창군을 지나는 고속도로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단 한 개며, 아직까지 개통된 열차도 없습니다.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되어 있고, 진천-합천 고속도로가 거창을 지나도록 되어 있어 어느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간선’ 교통망과 관광지를 염을 ‘지선’이 되는 지방도로의 확충이 없다면 관광객을 유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장 먼저 마리면에서 무주로 이어지는 37번 국도의 4차선 확장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거창군에 계획된 도로망은 거창의 북동부와 남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산림 관광지가 밀집된 북서부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어 국도와 지방도의 확장이 있어야만 큰 이점이 생기다는 것은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구인모 군수님께서도 마리면부터 북상면까지 국도와 국지도 4차선 확·포장을 공약하셨고,

올해 중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인 만큼 우선적으로 장풍숲에서 산림레포츠파크까지 4차선 확장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무주리조트가 있는 설천면까지도 무주군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서울·경기·충청도의 관광객이 무주를 찾은 후 자연스럽게 거창으로 방문할 것이며,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산림레포츠파크도 분명히 감악산처럼 많은 관광객들로 들썩일 것입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리스크를 상쇄해야 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수단을 활용해서 인구감소라는 위험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생활인구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만 가득 담아 활기가 넘치는 거창군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의 유입이 절실한 만큼 각 관광 거점과 연결되는 도로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거창의 백년 대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희망과 생기가 가득찬 거창의 미래를 그려주시길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1. 15. 10:00)

5 분 자유 발언

**주민참여예산, ‘실속’ 채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김 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창읍 가지역구 김홍섭 의원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고,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을 받는 성과를 넘어, 이 제도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네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 부터 군민의 실생활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조례는 단순히 ‘참여를 확대한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이 마을 꽃길 가꾸기나 단순한 시설 보수처럼, 행정에서 평소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조례에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담아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사업에 예산을 써야 하는지 그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주민들께서도 어떤 사업을 제안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조례에 ‘주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단순 반복적인 관리 사업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세워 주민참여예산만의 색깔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다운 심사’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행정의 검토 결과를 단순히 확인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는지를 깐깐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조례에 사업의 공공성, 다수 주민 수혜성 및 주민 체감도 등을 의무적 검토사항으로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예산을 쓴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군민께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정작 사업이 잘됐는지, 주민들 삶이 나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게 해서, 그 소중한 의견이 다음 해 예산에 다시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례에 꼭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은 단순히 예산의 일부를 나눠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동네의 어떤 문제부터 해결하는 데 쓸 것인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의 부적정 사업 예시를 보면, 현재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CCTV 설치 사업은 매뉴얼에 부적정 사업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청소련수련관과 같은 시설물 기능보강, 기추진 중인 꽃길 조성, 화장실 정비, 쓰레기 집하장 설치, 도로 표지병 설치 역시 매뉴얼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이처럼 운영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부적정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뉴얼의 기준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강제력을 갖지 못한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예산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예산이 바뀌지 않으면 군민의 일상 역시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운영 매뉴얼의 취지가 실제 예산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1.15.)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3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	11
4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2. 26.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2. 26.
라. 상정일자 :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1.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 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방문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전문 인력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2026년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 운영
나. 위치 : 항노화 힐링랜드 일원(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다. 사업비 : 90,000천원(국 45,000 도 13,500 군 31,500)

1) 산림치유 : 60,000천원(국 30,000 도 9,000 군 21,000)

2) 숲 해설 : 30,000천원(국 15,000 도 4,500 군 10,500)

라. 사업량 : 3명(산림치유지도사 2명, 숲해설사 1명)

마. 시설현황

1)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무장애 탐방로,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2) 치유의 숲 : 산림치유센터, 무장애데크로드,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서비스(산림치유·숲해설) 프로그램 기획·운영

1) 산림서비스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

2) 전 연령층 대상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3)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피드백)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

사. 위탁기간 : 2026. 3. ~ 11.(예산별위내) ※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아. 향후계획

1) 2026. 1월초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2) 2026. 1월중 :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3) 2026. 2월중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4) 2026. 2월말 : 위·수탁 협약체결

4. 참고사항

가. 2025년 산림치유 및 숲해설 민간위탁 운영실적

1) 운영기간 : 2025. 3. 15. ~ 11. 15.

2) 장소 : 항노화힐링랜드 일원

-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무장애데크로드, 명상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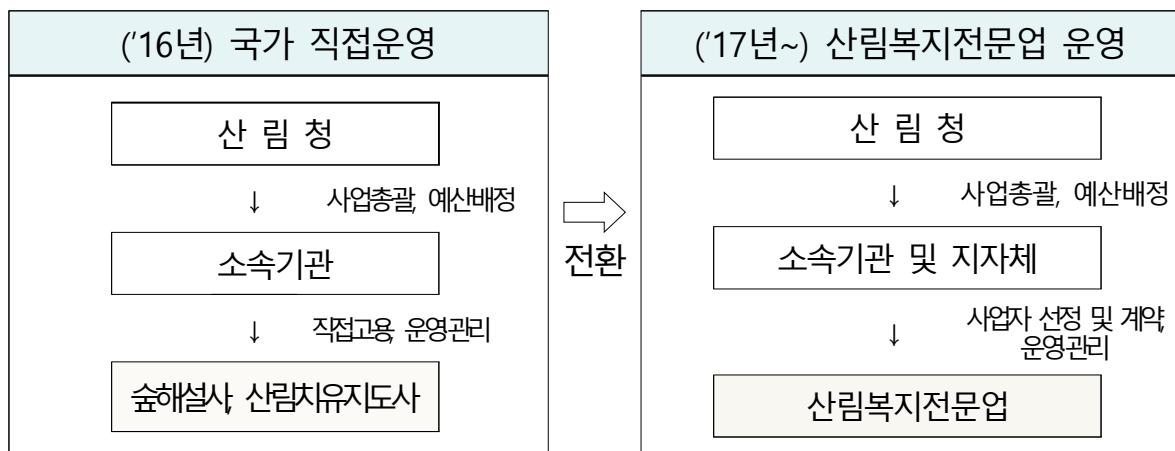
3) 대상 : 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층

4) 인원 : 1회 20명이내

- 5) 위탁기관 : 좋은숲(대표 신승호)
- 6) 운영방법 : 각 프로그램별 산림치유지도사(2명)·숲해설사(1명) 자율 진행
- 7) 참여인원 : 총 4,139명(산림치유 2,177명, 숲해설 1,962명)
- 8) 신청방법 : 힐링랜드 홈페이지 및 전화 예약 등
- 9) 체 험 료 : 산림치유 어른 1만원, 청소년 5천원 / 숲해설 무료
- 10) 프로그램 :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 산림치유 : 주 6일, 일 2회(09:30~12:00, 13:30~16:00)
 - 숲 해 설 : 주 5일, 일 3회(10:00~11:00, 13:00~14:00, 15:00~16:00)
- ※ 계절별 힐링랜드 현장에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운영
- 11) 세외수입 : 금13,899천원(산림치유프로그램)
 ※ 숲해설 무료

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분야의 참여 확대 및 활성화 도모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다. 관계법령 : 붙임

- 1)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 5)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 6)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7)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거창항노화힐링랜드의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을 산림복지전문 인력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산림복지 시설을 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산림복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치유의 숲 및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를 일정 인원 이상 배치하여야 할 법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아울러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9조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산림치유지도사 활용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은 법령 이행 성격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재원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군비 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일부에 해당하여 재정적 부담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개시일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본 안건은 2026년 3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예정하고 있으나, 의회 동의 요청 시점이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개시 60일 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제출되었음.
-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확정 시기가 연말에 이루어진 점, 이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세부 운영계획 확정이 지연된 점, 전년도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반영을 위한 내부 검토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의 사정으로 의회 동의 요청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임.

- 본 안건이 조례에서 명시한 60일 전 동의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의회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통제 기능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기간을 지켜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안건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시기가 지연된 사유를 지적하되, 사업의 공익성과 법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2. 26.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2. 26.
라. 상정일자 :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1.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계약이 2026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위·수탁 절차를 이행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게시 신고 접수대행
나. 위탁업무

- 1) 현수막 게시 신고서 접수 및 검인 날인, 수수료 접수
 - 2) 현수막 설치·철거 대행
 - 3) 게시대의 경미한 보수 및 유지관리
 - 4) 재난·재해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장비·인력 지원
- 다. 위탁기간 : 3년(2026. 4. 1. ~ 2029. 3. 31.)

※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구분	계	거창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개수	108	47	4	3	4	6	7	5	9	6	5	9	3
면수	532	235	20	15	20	30	35	25	45	30	25	37	15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마. 소요예산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3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2)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6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거창군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계약이 2026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현수막 지정계시대는 불법 광고물 발생 억제, 도시미관 개선, 군민의 공정한 이용 보장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시설로서, 상시적인 관리와 신속한 민원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무는 행정처분이나 권리 제한을 수반하지 않는 관리·대행 사무이며 전문 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시설 유지·관리 업무로서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에서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광고물 관리 및 안전점검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함.
- 수탁자 자격기준 또한 관련 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단체 여부, 장비·인력·사무실 보유, 보험가입 능력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현수막 지정계시대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 중임, 거창군은 기존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타 시·군의 운영 사례와 비교 하더라도 위탁 범위, 비용 구조, 계시기간 등에서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며, 위탁 근거, 위탁 범위, 수탁자 선정 절차 등이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게 마련되어 있고 타 시·군 운영 사례 및 기존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 효율 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적정한 방식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2.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2. 26.
- 라. 상정일자 :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1.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농업과장)

- 가. 지애플(G-APPLE) 기존 위탁업체 재계약 포기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안정성 유지, 예산 절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신규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지애플(G-APPLE)
 - 시설위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 푸드종합센터 옆

3) 시설규모 : 1,372.12m²(지상 2층 999.12m², 반려견놀이터 373m²)

구 분	면적(m ²)	용 도	비 고
합 계	1,372.12	-	철골구조
지애플	1층	535.13	사과제품전시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
	2층	463.99	휴식, 체험, 교육 공간 및 옥외휴식공간 등
반려견놀이터	373.00	반려견 동반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간	야외공간
조경 및 사과나무 관리	사과나무 151주 등	지애플 주변 조경 및 사과나무 관리(병해충·잡초 관리 등)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사무 : 지애플(G-APPLE)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전반
 - 지애플 시설 관리·운영(건물 내·외부 시설 및 기계·장비 등)
 - 지애플 사무 관리·운영(제품 판매 및 체험, 교육, 행사 등)
 - 그 밖에 지애플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 등
- 2) 위탁기간 : 2026. 3. 1. ~ 2028. 12. 31.(2년 10개월)
- 3) 위탁예산 : 없음
- 4)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선정
- 5)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전문성, 유사시설 경력, 운영 능력 등 전반 고려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거창군 소재 법인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다. 그간 추진현황

- 1) 2022. 10. : 지애플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 2) 2023. 1. ~ 8. : 위탁운영 실시(농업회사법인 엉클팜)
- 3) 2023. 8. ~ 9. : 위탁중단에 따른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 4) 2023. 10. ~ 현재 : 위탁운영 실시(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
- 5) 2024. 2.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전환

- 6) 2024. 7. : 식사류 신메뉴 개발(사과비빔밥, 사과돈가스, 사과국수)
- 7) 2025. 8. 6. : 재계약 적정성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함 원안 가결 / 평가점수 : 84.6점(정량 25점+정성 59.6점)
- 8) 2025. 9. :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군의회 동의 요구 ⇒ 원안 가결
- 9) 2025. 12. 11. : 기존위탁업체 민간위탁 재계약 포기서 접수

라. 향후계획

- 1) 2026. 1. : 민간위탁 공고
- 2) 2026. 2.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3) 2026. 2. : 위·수탁 계약체결 및 인계·인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시 지애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나 지난 12월 11일 해당 수탁기관이 재계약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신규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본 시설은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핵심 거점시설로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포기에 따라 2026년

부터는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공개모집 공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협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일정상 2026년 1월부터
즉시 위탁 운영을 개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특히, 연초 시설 운영 공백 발생 시 방문객 민원 증가,
시설 관리 소홀, 기존 예약·프로그램 취소 등 행정 신뢰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협의 결과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 업체가 시설 운영을 계속
하기로 합의 됨.
- 이는 신규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완료 시까지의 과도기적·
임시 운영 조치로, 민간위탁의 장기 연장이나 사실상의
재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였으므로 2026년 이후 민간위탁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2026년 2월까지의 운영은 재계약에
따른 위탁이 아닌 임시적 관리·운영 조치로 봐야 할 것으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 본 사무는 시설 관리·운영 및 판매·체험 등 서비스 제공
사무로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며 또한 「거창군 거창
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의 법적 근거는 명확함.

- 신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이는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됨.
- 본 안건은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포기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신규 민간위탁이 필요하게 된 사안으로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2.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2. 26.
- 라. 상정일자 :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6. 1.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소득과장)

- 가.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지속하고, 휴게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거창군 우수 농·특
산물의 홍보 및 판로 확대 효과를 유지·강화하기 위함
-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 나. 위치 : 가조면 가조가야로 1523(거창한휴게소 광주방향
사과전망대 1층)

다. 규모 및 장비현황

구 분	면적(m ²)	장비현황	비 고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대 1식 - 진열대 1식 - 쇼케이스 1식 - 저장창고 1식 - 냉난방공조시설 및 POS시스템 	철골구조

라. 수탁자 : 거창농특산물협동조합(대표 이장호)

마. 위탁기간 : 2023. 4. 2. ~ 2026. 4. 3.(3년간)

※ 재계약 기간 : 2026. 4. 4. ~ 2029. 4. 5.(3년간)

3. 위탁사무 범위 : 시설운영 및 사무운영 전반

- 가.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관리 운영(건물 및 장비 등)
- 나. 그 밖에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위한 사항 전반

4. 운영현황

- 가. 취급품목 : 사과, 사과즙, 잡곡 등 20개 종류 이상
- 나. 매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탁자	(사)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						거창농특산물협동조합		
매출액	40,555	67,222	92,667	68,998	78,420	102,044	275,523	443,072	465,565

5. 그간 추진사항

- 가. 2025. 11. 19. : 민간위탁사무 자체평가 실시
- 나. 2025. 12. 4.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추진
 - 평가점수 : 90.8점(정량평가 28점 + 정성평가 62.8점)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함 원안 가결

6. 향후 추진일정

- 가. 2026. 1. : 민간위탁 재계약 군의회 동의 요구
- 나. 2026. 2. ~ 3. : 계약절차 진행
- 다. 2026. 4. ~ : 위탁업무 개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안건은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4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거창농 특산물협동조합에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반 소매시설과 달리 유동 인구가 많고 지역 대표 농산물 홍보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공간으로, 단순 임대 개념이 아닌 정책적 목적을 가진 관리·운영 방식이 요구된다 할 것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본 사무는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및 장비 관리,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진열·운영, 휴게소 이용객 대상 홍보 기능 수행 등으로 구성된 시설 관리·운영 사무로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함.

- 거창군농특산물협동조합은 경상남도 거창군을 기반으로 하는 농특산물 유통·판매 전문 협동조합으로 지역 농산물의 품질 관리, 유통, 판매 및 홍보 마케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지역 농산물의 특성과 생산 구조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농가와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은 외부 전문업체에 비해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으로 평가된다 할 것임.
- 현 수탁기관의 운영기간 동안 매출 실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과 농특산물 유통·판매 전문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90.8점)으로 의결되었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재계약은 가능하며, 위탁기간 또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운영 성과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재계약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공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 가결함이 적정하다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